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6
----------	-----

2020. 9. 17.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2. 김진홍 의원 등 9명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0. 9. 17.)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진홍 의원 )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규정 실익이 없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 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김진홍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음
-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sup>1)</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sup>2)</sup>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 1)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정되었음

- 안 제3조(기능)제1호는 제2조 삭제에 따른 약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호는 현행 “8개목으로 규정한 사항”을 “「아동수당법」에서 위원회 심의사항<sup>3)</sup>으로 정한 사항”으로 한 바,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 안 제4조(구성)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sup>4)</su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개정사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는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위원의 임기)의 전부 개정 사항도 현행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임
- 안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및 안 제11조의2(간사 등)의 신설도 조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3)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 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사항) : 아동수당 소급지급, 대리수령, 아동수당 환수 등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
----------	-----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진홍·이향숙·안지연·  
김세준·복진경·김광심·  
최남일·이상애·박다미  
(이상9인)

## 1. 제안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규정 실익이 없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3. 「아동수당법」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2(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p> <p>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p> <p>2. (생략)</p> <p>3.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p> <p>가. 아동수당 소급 지급의 기간 산정 제외에 관한 사항</p> <p>나. 보호자가 아닌 자의 아동수당 대리 수령 인정에 관한 사항</p> <p>다.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라. 아동수당의 환수금 발생 시 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제3조(기능) ----- ----- ----- -----.</p> <p>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p> <p>2. (현행과 같음)</p> <p>3. 「아동수당법」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p>

마.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사.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4. (생략)

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8까지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삭제>

에 해당하는 사람

2.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로 처벌받은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

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신 설>

<신 설>

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2(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 ② 삭제 <2019. 1. 15.>
- ③ 삭제 <2019. 1. 15.>
- ④ 삭제 <2019. 1. 15.>

□ 아동수당법[2019. 1. 15. 법률 제16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③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제3항에 따른 지급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